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을 반대한다

영장남발을 문제삼는 대법원은 영장발부 주체가 ‘법원’이었음을 상기하라

1. 법원행정처는 2023. 2. 3.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등의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6월 시행을 예고하였다. 위 개정안의 내용은 1)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2)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4)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리제도 도입 등이다.
2. 위 1) 개정안은 현행 수사절차상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2) 3)의 각 개정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의 검색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포괄영장 금지, 강제수사의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반대는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위 4) 개정안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통제의 일환으로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다는 영장주의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는 ‘옥상옥(屋上屋)’의 무용한 제도일 뿐이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사법부가 주장하는 ‘남발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지금까지 모두 법관이 발부한 것이다. 청구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다. 만약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영장 담당 법관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통제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만약 사법부의 주장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된 것이 사실이라면 영장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줄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5.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대면심리 제도는, 명칭을 불문하고 사실상 법관의 심문을 받게끔 강제하여야만 구현되는 제도이다. 이같은 심문제도의 도입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현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대법원 규칙을 줄속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규칙제정권의 행사라 비판받아 마땅하며 수사기관이 반대하는 논거인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6.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집회참가자 수백 명에 대한 휴대폰, 계좌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후보자비방죄 등 표현에 관한 혐의에 대하여도 서슴지 않고 계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다. 영장 심사권한을 방기하는 사법부가 할 일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이지 규칙제정권을 남용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2023. 3.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